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**배포 즉시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무역구제정책팀 나기용 팀장, 조부임 사무관(5552)
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, 유경희 주무관(4954)
덤핑조사팀 방순자 팀장, 허은수 사무관(5573), 김명준 주무관(4962)

# 제319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

## - 돈육가공 및 기초화합물생산 기업에 FTA 무역피해 인정 -
## -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개시 결정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홍순직)는 '13.9.13(금) 제319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○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

○ 또한, 말레이시아산 합판(Plywood)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

## 1 돈육가공 및 기초화합물생산 기업에 FTA 무역피해 인정

□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2개 기업은 한-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음

○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

* EU산 돼지고기 수입액(백만불) : ('11상) 284 → ('12상) 316, 11.2%



□ 또한, 한-싱가폴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무역피해를 인정함

○ 동 기업은 에틸렌글리콜 등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싱가폴산 해당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함

* 싱가폴산 수입증가율(백만불) : ('11상) 27 → ('12상) 33(22.8%↑)

□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「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,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

## 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개시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*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예정('14.1.31)인 바, 동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

*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판과 직교토록 적층하여 만든 후판(厚板) 제품으로, 거푸집 타설용, 건축 내·외장재,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

○ 재심사요청인은 선창산업(주), 성창기업(주), 이건산업(주)으로, 현재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부과 중*인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함

*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11.2.1 ~ '14.1.31(3년) / 5.12% ~ 38.10%

○ 무역위는 요청인이 "요청자격" 및 "요청기한"을 준수하였고, "덤핑방지관세 종료로 인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"과 관련하여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함

□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, 무역위는 국내 이해관계인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

<붙임 1>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
<붙임 2> 말레이시아산 합판 재심사 개시 개요
<붙임 3> 반덤핑 재심사 절차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팀 조부임 사무관(☎ 2110-5552), 덤핑조사팀 허은수 사무관(☎ 2110-5552), 산업피해조사팀 유경희 주무관(☎ 2110-49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붙임 1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FTA 체결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□ **(요건)** 신청기업의 피해가 FTA로 인한 수입이 주된 원인일 것

① FTA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
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·고용·가동률·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②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·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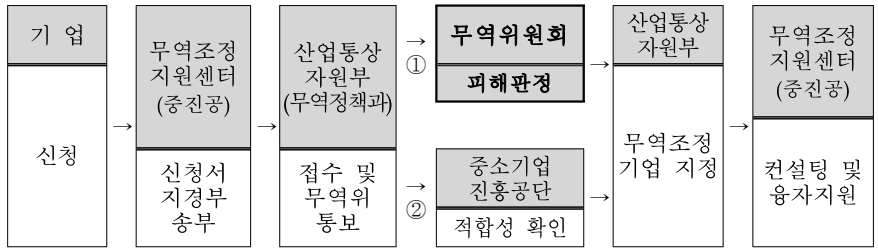
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,

○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

*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**(피해판정현황)** ‘13년(9월 현재)에 총13개 기업에 대한 판정을 했으며, 10개 기업에 피해판정

<무역조정 지원 기업 피해판정 현황(단위 : 개사)>

| 구분 | ’08년 | ’09년 | ’10년 | ’11년 | ’12년 | ‘13년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판정 건수 | 3 | 3 | 2 | - | 13 | 13 |
| 피해 판정 | 2 | 3 | 2 | - | 8 | 10 |
| 피해 없음 (철회 포함) | 1 | | | | 5 | 3 |

* ‘2013년 9월 13일 현재

○ 총 24건의 피해 판정 중 돈육가공업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핸드백 및 지갑(2건) 순

* 판정품목(건수): 머루주(1), 시계(1), 염장고등어(1), 복분자주(1), 골프웨어(1), 도료경화제(1), 티셔츠(1), 탈모방지샴푸(1), 초콜릿(1), 방적기계부품(1), 와인(1), 등산화(1), 스포츠용신발(1), 에틸렌글리콜(1)

□ **(지원내용)** 컨설팅 자금 및 융자 지원

*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소요비용의 80% 지원(기업 당 40백만원 한도)

○ 융자 :

- 대출 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3%p차감(기준금리)

* ’13년 3/4분기 현재 3.27%
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, 운전자금 5년 이내

-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45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

## 붙임 2 말레이시아산 합판 재심사 개시 개요

### 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선창산업(주), 성창기업(주), 이건산업(주)

○ 재심사 대상국 : 말레이시아

○ 재심사요청물품 : 합판(Plywood)

* 정의 :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, 두께 6mm 이상인 후판(厚板) 제품

* 용도 : 거푸집 타설용, 건축 내·외장재, 가구, 마루판 등 다양

### □ 국내수요자 및 수입자

○ 수요자 : 주로 지역단위의 중소 건자재 유통상이며, 이들을 통해 소규모 건축업자(최종수요자)에게 공급됨

○ 수입자 : 미산우드(주), 동창종합건재(주), (주)동창, (주)케이원목재, (주)태신트레이딩 등 다수

### □ 덤핑방지조치 현황

○ ’11. 2. 1 :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(원심)

-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: ’11. 2. 1 ~ ’14. 1. 31(3년)

- 덤핑방지관세율 : 5.12% ~ 38.10%

### □ 국내시장 규모(‘12년 기준)

○ 국내시장 규모 : 1,344,744㎥, 7,023억원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28%), 재심사요청물품(17%), 기타국물품(55%)

## 붙임 3 반덤핑조사(재심사) 절차도

